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27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63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구단10036 판결
변 론 종 결	2019. 5. 23.
판 결 선 고	2019.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게 한 [별지 1]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0,840,750원, 지방교육세 6,637,420원, 농어촌특별세 3,542,020원의 부과처분과 [별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27

1]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28,235,220원, 지방교육세 19,336,070원, 농어촌특별세 9,668,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별지 1]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게 한 [별지 1]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28,235,220원, 지방교육세 19,336,070원, 농어촌특별세 9,668,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별지 1] 제1항 및 제2항 부동산에 대한 각 취득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별지 1] 제2항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부과처분의 감액 경정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고, 주위적 청구 중 [별지 1] 제2항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별지 1] 제2항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8. [redacted]구 B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아크릴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6. 13. [별지 1]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나머지 지분 1000분의 229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취득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27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6. 17. 위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감면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5. 6. 11. 원고에게 '원고 회사는 관계회사인 소외 회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설립하고 소외 회사를 폐업하지 않고 동종업종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기존 법인인 소외 회사와의 사업 연관성 및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법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고, 2015. 9. 30. 청구취지 기재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7. 8. [redacted]광역시장에게 피고의 취득세과세 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redacted]광역시장은 2015. 8. 26.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불채택 결정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7. 9. 21.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27

원고는 2014. 6. 13. 광주지방법원 V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는바,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2014. 5. 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오인하여 같은 항 제7호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구 지방세법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로 규정하면서도 '원시취득'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는 강학상 개념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①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② 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 내지 5항, 제268조) 경매 이전에 설정되어 있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27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는 점, ③ 민법 제578조는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④ 대법원도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101 판결,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경락에 의한 취득은 승계취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인규

판사 김성주

판사 박정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27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redacted]구 W 외 9필지 토지 3,802㎡, 건물 922.6㎡

2. [redacted]구 X 외 1필지 토지 20,847.1㎡, 건물 8,780.14㎡ 중 지분 1000분의 77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27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4. 5. 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27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27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끝.